

12월말
결산법인의
'20년 귀속
법인소득

**법인지방소득세
신고 · 납부**

2021년 4월

국세청 홍보대사 이지은(아이유) · 이서진



행정안전부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- **개념** :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
- **과세대상 법인소득** : 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 **지방세법 제87조**
- **신고·납부기한** :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
 ※ 연결법인의 경우,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**지방세법 제103조의37**

•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	1%	-
2억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2%	4,200만원
3천억원 초과	2.5%	9억 4,200만원

•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



⊗ 세율

-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
 ※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,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**지방세법 제103조의19**
- 표준세율(1%, 2%, 2.2%, 2.5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20**
 ※ 조합법인 등은 표준세율 대신 0.9%, 1.2% 적용 **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**
-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(1%, 2%, 4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1**
-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등 미환류소득 추가과세
 (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×10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1**



- ⊖ 공제·감면세액
- ⊕ 가산세
- ⊕ 추가납부세액

-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
- 「지방세기본법」상 가산세 **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**
- 「법인세법」상 가산세의 10% **지방세법 제103조의30**
-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% (이자상당가산액,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, 이월과세 등 추가납부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0**



⊖ 기납부세액

- 예정신고납부액,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납부세액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
 ※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 (2018.1.1. 이후 성립분)



- 확정신고와 납부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
- 수정신고 **지방세법 제103조의24**

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?



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”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하세요!

■ 근거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9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0

■ 적용대상

-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,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
※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(수정신고 제외)

■ 차감액

-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

■ 차감방법

-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

$$\text{법인세 과세표준} - \text{외국법인세액} = \text{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}$$

※ 당해연도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향후 15년 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

■ 제출서류

-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의12서식(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)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
※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, 부표 5의3 등 첨부서류 포함

■ 문의사항

- 00시청 00과 ☎ 000-000-0000

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은 이렇게!!

• 총부담세액 > 기납부세액 :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총부담세액		기납부세액			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4,000원		A(본점) (70%)	B(지점) (30%)		
6,000원				→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	
				→ 차감납부세액 (안분신고납부)	

구 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4,000원
기납부세액	총액	4,000원	
	안분	2,800원	1,200원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

• 총부담세액 < 기납부세액 :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한 급금은 본점 가산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총부담세액

10,000원

기납부세액

A(본점)
(70%)

B(지점)
(30%)

21,000원

→ 총부담세액
안분

→ 환급대상액
(본점 일괄 환급)

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
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
각 사업장별
기납부세액으로 차감

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에서
일괄 환급

구 분	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	7,000원	3,000원	31,000원
기납부 세액	총 액	31,000원		
	안분대상액	10,000원 (총부담세액)		
	안 분	7,000원	3,000원	
	본점가산 (=환급)	21,000원 (31,000원 - 10,000원)		
	소 계	28,000원	3,000원	
차감납부할세액		-21,000	0	



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.



■ 직권 연장

- ① 대상: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,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
 - ※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,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- ② 연장기한: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
 - ※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신고·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. (1회 추가연장도 가능)

■ 신청 연장

- ①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
 - ※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에 근거
- ② 신청방법 : 하동군청 재정관리과에 신청서* 제출
 - * 신청서: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, 연장 받으려는 기한, 연장사유, 그 밖의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■ 문의처 :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☎055-880-2275

www.mois.go.kr



신고 · 납부 시 꼭! 챙겨야 할 사항



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☑ 신고서·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- ☑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

·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

분류	종류	서식 (지방세법 시행규칙)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별지 제43호
첨부서류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별지 제43호의2
	안분명세서	별지 제44호의6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별지 제43호의3
	가산세액 계산서	별지 제43호의4
	특별징수세액명세서	별지 제43호의5
	재무상태표	
	포괄손익계산서	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	
	소급공제 환급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9
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1
기타서류	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2

·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· 납부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

$$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+ 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※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·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

※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